

# 기록 업무 연속성 향상 방안

##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Continuity of Recordkeeping Operations

이영준\* · 조종연\*\* · 정종수\*\*\*

Lee, Young Jun · Cho, Jong-yeun · Cheung, Chong-soo

### 요약

본 연구는 재난안전법 제 69조의 재난원인조사의 자산화를 통한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을 위한 방안으로 표준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. 현재 「재난안전법」 제69조와 동법 시행령 제7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는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내용이 예비조사부터 본조사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.

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과거의 재난관리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게 존재해야 이를 바탕으로 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. 재난관리 기록을 통하여 과거를 거울삼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의 재난관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.

재난관리 사례를 자산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현재의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.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진행 하고자 한다.

**Keywords** : 기록, 실패, 자산화, 백서, 재해연보, 재난연감

## 1. 서론

「재난안전법」 제 69조는 재난원인조사와 관련 조항으로 제1항에 “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발생 원인과 재난 발생 시 대응과정에 관한 조사·분석·평가(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의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. 이하 “재난원인조사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,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”로 되어 있다.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기초지자체에서 이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있으며, 전체적인 통계 관리도 되고 있지 않다.

동법 2항에서는 “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(이하 “재난원인조사단”이라 한다)을 편성하고, 이를 현지에 파견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”로 되어 있다. 즉 1호(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·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재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)와 2호(제1호에 따른 재난에 준하는 재난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체계적인 재난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) 부합하여야 원인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.

또한 동법 4항에서는 “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원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게 소속직원의 파견(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요청의 경우로 한정한다), 관계 서류의 열람 및 자료제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”로 되어 있다. 국토부의 항공 및 철도처럼 조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재난사례별로 구성하는 것으로 모든 재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.

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재난원인조사에 대한 법과 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재난원인조사의 자산화 방안이 있다.

## 2. 본론

공자의 말로 논어의 위정편에 온고지신(溫故知新)의 뜻은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안다는 뜻이다. 재난원인조사는 이 사자성이처럼 재난의 과거 사례를 거울삼아 현재의 대응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난사례의 기록이 조사되고 표준화 및 통합된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.

\* 정회원 · 송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수료 junny\_307@naver.com

\*\* 정회원 · 송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박사과정 jyncho.kr@gmail.com

\*\*\* 정회원 · 송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 isobcm@ssu.ac.kr

대한민국은 기록문화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찬란한 문화유산 국가가 무색할 정도로 재난관리 기록문화는 선진형이 아니다. 「재난안전법」시행규칙 제19조의5에는 1호에 예비조사(재난·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,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), 2호 본조사(재난·사고의 발생원인, 대응과정, 위험요인,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·분석,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)로 되어 있다.

또한 「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의 운영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재난원인 조사·분석·평가를 하는데 기여하고 유사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」로 되어 있다. 동 규정의 용어정의에는 일반재난원인조사와 간접재난원인조사 그리고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가 있다. 하지만 조사의 관리 차원에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다

### 3. 결론

본 연구에서는 「재난안전법」제 69조의 재난원인조사 관련 법·제도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으로 관련 재난이 존재하는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실행하도록 하는 (가칭) 재난 및 안전사고 기록관리에 관한 조례(안) 제시하고자 한다.

#### 감사의 글

본 연구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분야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이며, 이에 감사드립니다.

#### 참고문헌

재난안전법 (2023.09.15. 시행) 법률 제 19234호

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 294호

[https://search.naver.com/search.naver?where=nexearch&sm=top\\_sug.pre&fbm=0&acr=2&acq=dhsrhwltls&qdt=0&ie=utf8&query=%EC%98%A8%EA%B3%A0%EC%A7%80%EC%8B%A0+%EB%9C%BB](https://search.naver.com/search.naver?where=nexearch&sm=top_sug.pre&fbm=0&acr=2&acq=dhsrhwltls&qdt=0&ie=utf8&query=%EC%98%A8%EA%B3%A0%EC%A7%80%EC%8B%A0+%EB%9C%BB)